

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

기업명 (인증번호)	대표자 (소재지)	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	반납신청 수리일자
		근거규정	반납사유	
(사)환경사랑나눔회 (제2019-352호)	박*근 (서울시 영등포구)	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8조(인증의 취소)	경영악화 등으로 사회적기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	2026. 7. 24.

2026. 7. 24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

